

의안번호	
의 퇴 인	남인순의원
회 답 일	2024.12.10.
추계번호	24C5777
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매해 1억 8,480만원, 향후 5년간 총 9억 2,400만원 (연평균 1억 8,48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아동의 보호조치(안 제12조)	185	185	185	185	185	924	18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 (아동의 보호조치)	출산보호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	의무지출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조 (아동의 보호조치)	○	○ 연간 대상자 수에 관한 실적치가 부재하여 지난 3개월간의 실적치를 준용하여 추계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과 같이 숙려기간제도의 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될 경우, 숙려기간 비용 지원의 기간 또한 연장됨에 따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른 보호출산 숙려기간 연장 대상자 수는 최근 숙려기간 신청 대상자 실적치를 반영하고, 연간 대상자 수는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¹⁾
-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, 국회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1) 보호출산 숙려기간제도는 시행된 지 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간 숙려기간제도의 대상자 수에 대한 통계가 부재함.본 추계에서는 월간 실적추이가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. 참고로, 보건복지부 소관 「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」 사업에 따라 2024년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도 및 숙려기간제도가 시행되었으며 7일간의 숙려기간 지원의 예산은 총 4억 2,000만원임 ([참고자료] 참조).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추계방법은 보호출산 숙려기간제도 대상자 수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추계
 - (대상자 수) 추계의 전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최근 숙려기간제도 시행 후 3개월간 대상자 수(33명)를 연간 대상자 수로 환산한 132명이 추계기간 중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 가정
 - (지원단가)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숙려기간 동안 1일 기준 2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숙려기간 추가지원비용은 7일분에 해당하는 140만원이며 동 지원단가는 추계기간 중 변함없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매해 1억 8,480만원, 향후 5년간 총 9억 2,400만원 (연평균 1억 8,48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
대상자 수 (A, 명)	132	132	132	132	132
지원 단가 (B, 만원)	140	140	140	140	140
합 계(C=A×B, 억원)	185	185	185	185	18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숙려기간지원제도 대상자 수의 추정치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로서, 향후 실제 대상자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장우윤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4741	jangwy93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

- 2025년 보건복지부 소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중 보호출산 산모 지원 예산 산출근거
 - (2024년) 7억 2,000만원 → (2025년 요구) 7억 2,000만원, 전년동
 - (개요) 보호출산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을 독려하기 위해 의료비 및 보호출산 숙려기간(7일) 비용 지원
 - (의료비 지원) 3억원 → 3억원, 전년동
 - * (산출내역) 300명 × 1,000만원 = 3억
 - (숙려기간 지원) 4억 2,000만원 → 4억 2,000만원, 전년동
 - * (산출내역) 300명 × 140만원 = 4억 2,000만원
- ※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프랑스 및 독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숙려기간 지원 대상자 수를 산출